

‘삶의 질’의 혁명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 1차 정책토론회 발제문 -

김중해

국민승리21 정책자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1. 사회복지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황은 한마디로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돌파, OECD의 가입 등 외형과는 달리 국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은 경제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또는 사회복지의 수준은 정부지출에서 사회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사회복지제도의 실천 정도, 모두에 있어서 전세계 국가중 50위권에도 미달되는 수준으로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뿐만 아니라 후진국가보다도 삶의 질의 수준은 떨어진다.

이러한 사회복지 저발전의 원인은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된 이래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었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는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은 국민의 삶의 질의 보장이라는 현대 국가의 기능중의 하나인 국민의 삶의 질의 보장을 도외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명목상의 소득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복지 기본선은 국가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0%에 미달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0%선까지는 증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하여 남북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도입도 모색되어야 한다.

2. 군축과 세계개혁을 통한 사회복지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 예산의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살펴볼수 있다. 지출의 측면에서는 지출구조의 변화로서 군축이 가능하며 수입의 측면에서는 조세수입의 탈루를 막기 위한 세계개혁의 방법을 강구할 수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과도한 국방비부담으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비의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방위비는 약 3배 가까이 지출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비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으며, 사회보장 및 복지비도 약 1/3 수준으로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외국은 지방정부의 교육비 예산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선진국의 경우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보건의료비 및 사회보장 및 복지비 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정부 예산의 50%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 나라의 역대 정권들이 현대 국가의 기능증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의 보장에 매우 무관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삶의 풍요로움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의 기능도 감시, 통제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표 1) 중위소득국가간의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방위비 및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율(1993)

(단위: %)

국가	일인당 실질GDP(\$)	방위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태· 지역 사회사업
그리스	8,950	8.92	8.50	7.44	13.42	1.27
아르헨티나(12)	8,350	6.59	4.73	1.99	50.70	0.24
칠레	8,900	9.14	13.36	11.55	33.70	5.61
체코	8,430	6.90	10.96	18.02	36.90	2.00
멕시코	7,010	3.83	25.88	3.02	22.15	2.76
말레이시아	8,360	11.59	19.99	5.64	6.01	5.45
평균	8,333	7.72	13.90	7.94	25.38	2.88
한국	9,710	20.08	21.44	0.96	9.99	1.24

*비고: 1, 6개국은 한국의 90년 일인당 실질 GDP 99,710를 중심으로 ±82,000 범위에 있는 국가, 즉 37,000 이상 12,000 이하인 국가를 인구 1백만명이상인 국가를 선정함 것임. 이 범위에 포함된 국가중 데이터가 없는 국가는 에퀴시킴(프랑스), 페루수엘라

*자료: 실질 GDP는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135. 나머지 수치는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6, 1996

〈표 2〉 상위소득국가군의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방위비 및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율(1993)

(단위: %)

국가	일인당 실질GDP(\$)	방위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지역 사회시설
캐나다	20,950	6.53	2.75	4.66	41.24	1.03
미국	24,680	19.28	2.00	17.10	29.12	2.63
일본	20,660	4.11	6.03	1.60	36.80	13.76
네덜란드	17,340	4.20	10.18	13.73	37.99	3.56
프랑스	19,140	5.35	7.05	21.71	39.28	1.14
호주	18,530	7.73	7.45	12.64	32.85	1.60
영국	17,230	9.20	4.43	13.78	31.25	2.71
독일(91)	18,840	6.45	0.79	16.79	45.29	0.58
평균	19,671	7.85	5.08	12.75	36.72	3.37
한국	9,710	20.08	21.44	0.96	9.99	1.24

*비고: 1. 9대국은 일인당 실질 GDP \$15,000 이상인 국가중 인구 1천만명이상인 국가를 선정함. 비 방위에 포함된 국가중에 여러개 있는 국가는 제외시킴(이탈리아)

*자료: 실질 GDP는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135. 나머지 수치는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6, 1996

〈표 3〉 단계적 방위비 감축시 정부예산 잉여액 추정(1988~2002)

(단위: 백만원)

	1985	1986	1987	1988	1989	2000	2001	2002
정부예산(A)	588	596	677	705	729	863	954	1,001
	11	21	86	03	63	39	95	44
방위비(B)	1150	1273	1414	1524	1677	1844	2029	22321
	30	40	95	57	02	72	19	1
B/A	222	220	212	217	217	217	217	217
신방위비 비율(C)				192	172	152	132	112
신방위비(D)				1350	1331	1294	1236	11537
A-C				92	22	06	17	6
잉여액(B-D)				1735	3458	5506	7920	10283
				5	0	6	2	5

*비고: 1. 정부예산(A) 및 방위비(B)는 99년부터 10% 증가로 가정.

2. 방위비는 98년부터 예산대비를율 2%씩 감소시켜 2002년에는 11.2%가 되는 것으로 가정.

3. 정부예산은 일관되게 가정함.

가능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냉전의 소멸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남북한의 군비감축이 이루어지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김권기간 중 방위비 지출수준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 2002년까지 약 30조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주택, 의료,

교육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97년 현재 21.1%에 달하는 방위비 비율을 정부예산대비 2%씩 매년 줄여나기 2002년까지 방위비 비율을 현재 수준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면 98년에는 1조 7천억원, 99년에는 3조 4천억원 등 2002년까지 약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예산으로 각종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연비

1) 소득보장 : 국제적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험제도 혁신 !!!

(1) 전국민에게 4대 사회보험 확대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험에서 제외된 인구층이 상당수에 달해 국민들은 질병이나, 산업재해, 해고 등을 당할 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이다. ILO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우리 나라

(표 4) 소득보장에 대한 ILO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실태

사회적 위험의 종류	사회보장 급여 종류		적용인구기준(%)				급여 수준(기간)	
	ILO 기준	한국(96)	피용자기준		경제활동인구기준		ILO기준	한국(96)
			ILO기준	한국(96)	ILO기준	한국(96)		
질병	현물급여	의료보험	100	100	75	100	사고회 전기간	219일
	상액수당	역일식	100	11.6	75	5.6	60% 이상	없음
실업	실업수당	고용보험	85	43.0	-	-	50% 이상	50%
노령	노령연금	국민연금					45% 이상	54% ^{a)}
부상	장액연금	공무원연금	100	68.5	75	41.3	50% 이상	24-38% ^{b)}
		사학연금						
사망	유족연금	공인연금	100	68.5	-	-	45% 이상	21% ^{a)}
		군인연금						
산업 재해	노동불능	산업재해보상보험	100	68.5	-	-	60% 이상	70%
	불구 사망						60% 이상	70-90%
						50% 이상	62%	
아동 양육	아동수당	역일식	50% ^{c)}	0	20% ^{c)}	0	임금의 3% X 자녀수	없음
출산	출산수당	유급출산 휴가	모든 취업여성	46.9	모든 취업여성	23.1	67% 이상	80-100%

*비고: 1) 국민연금의 중간소득자 기준

2) ILO의 최저기준임.

*내도 안의 검은 부분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임.

는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1.2%에 달하고,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근로자도 57%에 달하여(표 4참조) 소규모기업근로자나 일용직근로자는 항상 해고와 산업재해의 공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인구층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 영세기업 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를 포함 전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 확대
- 농민과 자영업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확대 개편
- 영세기업 여성근로자에게 국가와 기업이 공동부담하는 출산수당제도 도입
-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확대 적용

(2) 국제수준에 맞는 급여수준으로 재조정

사회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현금급여의 수준이 낮아 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와 국민들이 빈곤으로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현금급여 수준을 개편하여 장애나 질병, 사고를 당해 노동력을 상실해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급여수준을 재조정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급여수준을 조정하며, 급여수인상에 따른 재원조달은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 의료보험에 상병수당제도를 신설하여 일당의 60%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준을 ILO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원은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부담
- 저소득층부터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의 점진적 도입
- 유급출산휴가를 영세기업 여성근로자에게 확대실시하고 국가와 기업이 재원 부담

(3) 전기업의 퇴직연금보험 가입의 의무화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의 위헌 판결로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연금보험의 실시를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고와 은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4) 사회보험 기금운용에 가입자 참여 강화

4대 사회보험은 상당한 액수의 적립금이 있으나 제도의 주인인 가입자들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은 약 25조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의료보험은 약 4조원, 산재보험은 약 7천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보험가입자들은 이 돈의 운용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고, 정부의 자의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각종 기금운용에 근로자 등 가입자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각종 법령을 개정한다.

2) 의료보장 : 전국민에게 질높은 의료의 보장

(1) 전국민에게 주치의 제도 마련과 예방의료의 획기적 확대

상업적인 의료체계하에 벌어지는 치료중심의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전국민에게 주치의의를 배정하여 평생동안 체계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을 강조하는 진료체계로 우리 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 의사 1인당 150-200가구 정도를 담당하는 주치의 제도의 점진적 확대
- 전국민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여 진료기록을 체계화시킴
- 가정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아동기, 임신기 등의 의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함

(2) 의료보험급여의 대폭 확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험급여의 범위가 넓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가계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웬만한 질병의 치료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한정된 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농어민,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
- 침약 등 일상적인 한방급여의 보험급여 확대
- 급여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1년으로 확대
- CT 및 MRI의 보험급여 적용
- 특진의 남용 방지와 엄격한 심사 적용
- 40대 이상 성인에게 의무적인 암검사 실시

(3) 아동, 임산부, 노인에게 국가 건강검진 의무화

질병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연령층에 건강검진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시키며, 치료 위주의 의료제도에서 파생되는 과도한 의료비의 낭비를 억제한다.

- 6세이하 아동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의 의무화
-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진찰의 의무화

-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검진 의무화

(4) 1차 공공의료시설의 대폭 증설과 질적 개선

예방위주의 의료제도 확립, 그리고 질병 발생 위험 연령층에 대한 검진을 체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1차 공공의료기관의 수준을 대폭적으로 증설하고, 질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시설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대폭적 확대
- 보건소 등에 가정의을 배치하여 주치의 제도 확립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급 의료시설 집중 배치

3) 노동복지 : 산재 보험과 고용보험의 개선을 통해 기본적 노동자 복지 보장

(1) 산재재해범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현실화

산재보험에서 현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통근상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수준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인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해급여의 보상수준을 현실화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현재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수준을 7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2)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사업 획기적 개선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재해노동자들의 작업현장으로의 복귀에 있다. 따라서 현금 보상위주로 되어 있는 산재보험을 산재예방과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근본적으로 혁신시킨다. 이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산재병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한다. 또한 직업재활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활의사 등 재활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3) 산재관련 운영체계의 통합과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현재 예방업무는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 보상과 재활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재관련업무를 통합운영한다. 그리고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해주는 보험사업조합의 역할을 노동조합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4) 아동복지 : 모든 어린이에게 보육의 권리 보장

1997년 6월말 현재 14,565개 보육시설에서 646천여명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보육대상아동의 62%정도만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보육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은 1천여개소로 국공립시설이 시설수에 있어서나 보육아동수에 있어서나 그 담당비율이 매우 낮다. 이러한 민간시설중심의 보육사업은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간의 불평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보육비용부담에 있어서도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보육비용의 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이 가정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책임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자녀양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1) 모든 어린이에 보육비용 지원

현재 국공립 및 민간법인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용(시설별 지원제도)을 아동별 지원제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보육비용을 재산정하고 이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호자가 분담하도록 한다.

-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보육비용의 지원
- 보육수당의 지급
- 5세아동의 의무교육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일원화

(2) 공공보육시설을 배로 확충

현재 민간시설 위주로 되어있는 보육시설을 공공시설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한다. 국공립시설을 보다 확충하며 현재 민간개인시설은 일정 수준이상의 시설로 보강하여 법인시설로 전환하도록 한다. 현재 1천여개소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수를 2천개소 수준으로확충한다.

5) 노인복지 : 모든 노인들에게 보람있는 삶을 보장

(1) 모든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

현재 우리나라 노후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60세 이상의 노인들(현재 69세 이상)은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당

시 55-59세의 준고령층도 일부 사무직 또는 준공공기관의 근로자를 제외하면 거의 퇴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경로연금제도와 가족중심의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의식은 급속히 퇴조되고 있으며,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1998년부터 경로연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연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질적 수준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재정원이 98예산당장협회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규 경로연금 예산으로 단지 412억원만을 책정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크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
- 80세 이상의 노인은 월 6만 6천원, 65세에서 79세까지의 노인은 월 4만 6천원의 경로연금 지급

(2) 모든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평균수명이 점차 증가 함에 따라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치매, 중풍, 와상노인 등 요보호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시설에 수용되기 보다는 가정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반면, 가족의 부양의식의 감소와 여성취업의 증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요보호노인들의 목욕 등 개인 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전체 노인들 중 극히 일부 노인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체제의 구축
- 가정봉사원을 확대하여 노인단독가구 노인과 요보호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

6) 장애인복지 :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건설

(1) 저소득장애인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

1997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및 2급 중복 장애인 42천명에게 생계보호비 외에 월 4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총 229억원). 1998년부터 먼저 3, 4급 장애인(3만명)들에게 확대 지급하며, 연차적으로 생활보호 장애인 (95천명)에게

확대 적용한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불능 중증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장애수당제도를 도입한다. 1998년부터 자활보호 대상의 50%인 총 26천명의 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립자금융자를 확대한다. 현재 월 소득 35만원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700명)에 대해 가구당 1,200만원 연리 6%(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총 84억원). 융자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자활보호대상가구의 10%인 3,000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2) 장애인 의무교육 정착과 장애아동 통합교육 실현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시설을 설치한다. 현행 취학연령 장애인 추정치는 30만명으로 이중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80%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편의시설을 완비한다

(3) 장애인 재활치료기관 대폭 확대

현재 300병동 이상 종합병원 131개 중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은 74곳(56%)에 불과하며, 그나마 지역적 편차도 심하다. 따라서 300병동 이상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의무화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센터를 건립하며,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에 의료재활요원의 배치를 확대한다

(4)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2% 의무고용제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한다. 나아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300인 이하 기업에까지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직업장을 활성화한다

(5) 장애인시설 확대와 종사자 임금수준 개선

현재 수용시설에서는 보호 대상자의 78%만이 수용보호가 가능하다. 따라서 나머지 보호대상자(5천명)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증설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적정규모로 증설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종사자 임금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며, 장애인복지종사자들의 자조적 노력(전문가집단활동, 노동조합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7) 주거복지 : 전 국민의 기본적 주거 보장

(1) 공공임대 주택의 지속적 건립

1989년부터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은 약 20만호 건립되었으나, 여전히 주거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1998년부터 집권 기간동안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저소득층에게 기본적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2)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 실시로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

1995년, 1996년 정부는 5만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600억원을 책정하여 건물 1호당 300만원을지원했다. 1998년부터 건물 1호당 지원 금액을 6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4. 삶의 질 혁명을 위한 복지 행정체계 구축

1) 사회복지원 신설

삶의 질 혁명을 위해 국가의 사회복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확보와 효율적 사용, 행정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정책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비중이 증가하고 예산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이 요망된다. 경제정책과 분배정책의 균형을 위해 재정원의 위상과 준하는 복지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원’을 신설한다. 신설 사회복지원의 장관은 부총리로 임명한다.

- 내부부의 기능을 지방자치청으로 축소하고 인력을 복지관련 부서로 재배치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의 사회복지원으로 통합

2) 동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개편

기존의 행정서비스는 전산화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기존의 읍·면·동사

무소는 복지사무소로 개편하여 신설 '복지인'의 징복을 집행하는, 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행정요원은 축소 조정하여 복지업무로 재배치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한다.

복지사무소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민원과 공공부조, 경로연금, 가정봉사원의 관리 및 배치 등 사회복지서비스전달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

공약 총괄

근육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의 추가적 복지예산 마련 !!!
 새직기역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의 추가예산 확보

● 소득보장 : 국제적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험제도 혁신

- 1) 전국민에게 4대 사회보험 확대
- 2) 국제수준에 맞는 급여수준으로 재조정
- 3) 전기업의 최저연금보험 가입의 의무화
- 4) 사회보험 기금문명에 가입자 참여 강화

● 의료보장 : 전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의 보장!!!

- 1) 전국민에게 주치의제도 마련과 예방의료의 획기적 확대
- 2) 의료보험급여의 대폭 확대
- 3) 아동, 임신부, 노인에게 국가 건강검진 의무화
- 4) 1차 공공의료시설의 대폭 증설과 질적 개선

● 노동복지 : 신채보상과 고용보험의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자 복지 보장

- 1) 신채보상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현실화
- 2) 신채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사업 획기적 개선
- 3) 신채관련 운영체계 통합과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 아동복지 : 모든 어린이에게 보육의 권리 보장

- 1) 모든 어린이에 보육비용 지원 : 5년간 7조 2천억 투자하여 보육문제 해결
- 2) 공공보육시설을 배로 확충 : 5년간 4500억 투자하여 1천여 개소 확충

● 노인복지 : 모든 노인들에게 보람있는 삶을 보장

- 1) 모든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 : 5년간 3조 9천억 투자
- 2) 모든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 5년간 2조 3천억 투자하여 가정봉사원 확보

● 장애인복지 :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건설

- 1) 저소득장애인들의 기본적 생계보장
- 2) 장애인 의무교육 정책의 장애아동 통합교육 실현
- 3) 장애인 재활치료기관 대폭 확대
- 4)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
- 5) 장애인 시설해태와 종사자 임금수준 확대

● 주거복지 : 전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보장

- 1) 공공임대 주택의 지속적 건립
- 2)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실시로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 사회복지지원 신설

● 동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전환